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제정되면서 관련 제증명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징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상영관 관련 수수료 신설 2건 및 명칭변경 2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 등 관련 수수료 신설 6건 및 명칭변경 4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 관련 수수료 신설 2건 및 명칭변경 2건
- 「공연법」 및 「출판 및 인쇄 진흥법」 규정에 의한 수수료 명칭변경 2건 및 삭제 3건

3. 관계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 공연법 제39조제2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6.4.28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로 분별·제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증명의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 적법성 부문에서는

이번에 조정하려는 수수료는 상위법령에서 정수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음

□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수수료가 삭제되는 제증명이 3건인 반면, 새롭게 신설되는 제증명이
 10건으로 우리구 세입에는 다소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타당성 부문에서는

이번 개정내용중 명칭변경 11건중 제증명 구분란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은 표기상의 오류로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외 것은 수수료를 받게되는 제증명 민원명칭을 「○○○등록신청」에서
 「○○○등록」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신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사유도 불분명 할뿐아니라 조례 「별표1」의 전체적인 통일성에도 맞지
 않아 따로 붙임 주서정정과 같이 수정의결함이 타당할 것임.

≪ 관 계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제90조 (수수료) ①~②(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1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생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공연법 제39조제2항

제39조 (수수료) ①(생략)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